

파주시통일로변관리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99
----------	-----

제출년월일 : 2001. 10. 9.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자유로변 녹지대를 관리함에 따른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자연경관의 보호·관리와 쾌적하고 깨끗한 도로경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골자

- 관리 위탁지역을 통일로변에서 통일로변과 자유로변등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고 (안 제1조)
-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음. (안 제7조)

파주시통일로변관리위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통일로변관리위탁에 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의 제명중 “파주시통일로변관리위탁에 관한조례”를 “파주시통일로변등관리위탁에 관한조례”로 한다.

제1조중 “통일로변”을 “통일로변및자유로변등(이하 “녹지대”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관리위탁업무) 녹지대의 소공원, 향토꽃동산, 가로화단, 꽃길, 수벽등 자연경관의 보호·관리와 꽃묘식재 및 잡초제거, 수벽전지, 고사목 제거와 보식, 오물수거 등의 쾌적하고 깨끗한 노변 조성업무로 한다.

제3조내지제5조중 “통일로변”을 “녹지대”로 한다.

제6조중 “위반하였을 시는”을 “위반하였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7조를 제8조로 하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준 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실·과·소		산 립 과 (전화 940-4631)
입 안 자	산 립 과 장	심 광 용
	녹지 공원 담당	이 중 현
	담 당 자	방 인 구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통일로변관리위탁에관한조례		파주시통일로변등관리위탁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거 <u>통일로변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 <u>통일로변 및 자유로변등(이하 “녹지대”라 한다)</u> -----		
제2조(관리위탁업무) <u>통일로변 소공원, 향토꽃동산, 가로화단, 꽃길, 수벽등 통일로의 꽃식재와 잡초제거, 수벽전지, 고사목제거와 보식 및 오물수거 등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노변 조성업무 등</u> 으로 한다.		제2조(관리위탁업무) <u>녹지대의 소공원, 향토꽃동산, 가로화단, 꽃길, 수벽등 자연경관의 보호·관리와 꽃묘식재 및 잡초제거, 수벽전지, 고사목 제거와 보식, 오물수거 등의 쾌적하고 깨끗한 노변 조성업무</u> 로 한다.		
제3조(관리위탁)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u>통일로변</u> 관리사업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탁업무의 한계, 위탁보증금, 취소조건, 기타업무 위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관리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u>녹지대</u> ----- ----- -----		
제4조(위탁업무의 자격) <u>통일로변의</u>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업무의 자격) <u>녹지대의</u> ----- ----- -----		
제5조(위탁계약) ① <u>통일로변의</u> 관리는 계약에 의하여 위탁한다. ② (생 략)		제5조(위탁계약) ① <u>녹지대의</u> -----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위탁해약) 행정지시 및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u>시는</u> 위탁계약을 해약 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위탁해약) ----- ----- <u>때에는</u> -----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규칙으로 정한다.</u>		제8조(시행규칙) (현행 제7조와 같음)		